

인천지방법원 2018. 6. 22 선고 2018가단1697 판결 [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]

전 문

원고A

피고주식회사 다우정밀 (변경 전 상호 : 주식회사 카이저시계)

변론 종결2018. 6. 8.

판결 선고2018. 6. 22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제1, 2 토지에 관하여 각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1994. 9. 10. 접수 제28882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- 피고 1994. 9. 8. 원고에게 제품(시계) 외상 공급.

○ 원고 1994. 9. 10. 위 물품대금 채권의 담보 명목으로 원고의 아버지 B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제1, 2 토지에 관하여 각 등기원인 1994. 9. 8. 설정계약, 채권최고액 1,000만 원, 채무자 원고, 근저당권자 피고로 된 주문 기재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마쳐줌.

○ 피고 2004. 12. 16. 원고로부터 잔존 물품대금 채무 200만 원 전액 지급받음으로써 피담보채권 소멸로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 의무 발생(다만, 실무적인 착오로 근저당권설정계약의 해지와 근저당권등기 말소 처리되지 아니함).

2.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.

판사박대준

별지